

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발의년월일 : 1991. 7.

발의자 : 충청북도지사

● 제안이유

- '91. 7. 19 도직제 개편에 따라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업무 전담부서가 "내무국"에서 "기획관리실"로 변경됨에 따라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중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관리자를 이에 맞추어 변경 개정하려는 것임.

● 주요골자

-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의 관리자를 "내무국장"에서 "기획관리실장"으로 변경

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2조의2 (관리자 지정) 제2항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기획관리실장” 으로 한다.

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 제2항중 “내무국장” 을 “기획관리실장” 으로 “지방과장” 을 “예산담당관” 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

신구조문대비표

조례명 :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

현 행	개 정
<p>제2조의2 (관리자의 지정)</p> <p>① "생략" ② 관리자는 <u>내무국장</u>으로 한다.</p>	<p>제2조의2 (관리자의 지정)</p> <p>① "현행과 같음" ② 관리자는 <u>기획관리실장</u>으로 한다.</p>
<p>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</p> <p>① "생략" ② 위원장은 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<u>내무국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<u>지방과장</u>, 보건과장, 지역경제과장, 관광과장, 도시과장 등 관계사업과장으로 구성한다.</p>	<p>제15조 (위원장 및 위원)</p> <p>① "현행과 같음" ② 부위원장 은 <u>기획관리실장</u>으로 하며, 위원은 <u>예산담당관</u>,</p>